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2차)_수정

2025. 2.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Q1

시설 전산 프로그램 이용 중으로 기록물 출력 없이 기관 전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 · 관리하는 경우 2025년 시설평가 매뉴얼 일반사항/3.평가방법/마.항목에 따라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한 경우 전산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제공 전산프로그램(1365,VMS)은 개별 로그인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합니다.
- 평가일 현장에 출력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록은 전산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Q2

포괄승계(양도양수) 시 평가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립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시설)을 포괄승계(양도양수) 시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평가지표23(22) 수급자 건강관리의 수급자 결핵검진 포함 건강진단에 대해 기존 기관의 자료가 확인된다면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그 외 시설급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새로운 기관 운영 사항에 맞게 재수립 필요)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Q3

신설 또는 변경된 지표의 평가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 평가기준이 신설(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25.1.)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평가방법 면담·시연·현장 등 평가일 현장에서 확인하는 평가기준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Q4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내용 확인 의무와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있으나 관련 서류(사본)의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에서는 평가지표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기준①에서 급여제공계획 작성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일부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25년도에는 확인방법이 변경되었고 '24년까지는 사본 또는 전산열람기록(기관포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7월)부터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공단내부전산)도 확인함을 안내드립니다.

※ '23.7월 이후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보관 불필요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Q5

필수(확인)사항의 '서명' 을 대신하여 '도장' 을 찍어도 인정되나요?

- '서명'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매뉴얼 일반사항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에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참고) II. 매뉴얼 일반사항> 10. 용어설명> 다. 기타> 3) 서명

Q6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한 경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외부인 출입관련하여 시설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인하여 외부강사(프로그램) 제한, 지역사회자원활용의 자원봉사 미실시 등 선별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 ※('21년 평가매뉴얼) 지표39(38) 간호및의료서비스-기준① 월2회 진료와 지표 43(41)44(42)프로그램-기준②실시, ③반영입니다.
- ※('25년 평가매뉴얼) 지표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기준③실시, 지표 32(30),33(31)(프로그램)-기준②프로그램 실시, 지표32,33 프로그램-기준③ 반영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적용방법은 '22.1.부터 '24.5.까지 각 시기별로 안내한 한시적 적용방법에 따라 예외 인정합니다.
- 홈페이지>알림·자료실>장기요양 기관평가>평가매뉴얼 및 Q&A> **공지**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종료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1) 운영규정

Q7 운영규정 항목 중 '조직(직제, 업무분장 등)'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인정되나요? 아니면 업무분장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운영규정 상 업무분장은 직제와 직종에 따른 업무내용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에서 별도로 업무분장표를 확인하는 지표는 없으나, 평가지표18(17) 정보제공에서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종사자 근무체계, 급여제공직원 현황 등)를 기관 내부에 게시하였는지 확인 하므로 기관운영을 위해 업무분장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2) 사업계획 및 평가

Q8

2025년 사업계획을 '24년도에 이미 작성한 경우 세 가지 분야(기관운영, 서비스제공, 직원관리)를 포함하여 재작성해야 하나요?

- 사업계획서에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분야가 계획서 전반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Q9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이면서 직원인 경우에도 보호자 대표로 인정되나요?

-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로 임명하면 인정됩니다.
- 다만, 운영위원회는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권고 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4) 직원교육

Q10

2개 기관이 통합되어 B기관의 직원이 A기관에 소속되었는데, 신입직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B기관 입사 당시 모든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 기관 통합으로 B기관 직원들이 A기관으로 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었다면, B기관 직원은 A기관의 신입직원이 됩니다. A기관은 이들에게 급여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 평가 시에는 지표적용기간동안 입사한 신규직원에 대해 교육 시기와 교육 내용(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에 대해 면담하여 평가합니다.

※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달('25.1월)부터 적용

시설급여 평가지표4(4) 직원교육

Q11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 직원교육으로 확인하여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을 모두 교육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 신규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Q12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겸직을 시작한 경우 또는 퇴사 후 한 달 뒤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에 준하여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겸직한 경우, 기존직원으로 보고 연 1회 실시한 검진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신규직원으로 보고 입사 전 1년 이내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이 확인되는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Q13

2023년 3월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서 2024년 6월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2023년 검진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전·후 근무한 기간이 속해있는 연도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2023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2023년 1월~3월 까지 근무하였고 2024년 6월 이후 근무하고 있으므로 2023년과 2024년의 건강검진 결과가 확인되어야 평가 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Q14

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평가항목 충족이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항목에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의 5개 영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평가기준이 충족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Q15

신규입사자 검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의 형태로 받은 건강진단서가 있을 경우 인정되나요?

- 실시항목에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의 5개 영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평가기준이 충족됩니다.
- 따라서 채용신체검사서 양식 상 계측검사, 영상검사(흉부X선검사 항목에 해당) 및 판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상여부만 적혀있다면 이를 요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도출된 검진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합니다. 다만, 검진실시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세부검사내역 자료요청 등) 요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면 5개영역이 모두 확인되므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Q16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직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참여시간, 참여인원 수는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은 문화의 날 영화시청, 공연·미술관 관람, 동호회 활동, 워크숍, 스트레스 검사 지원 등 다양하게 운영 가능하나, 단순 회식만 진행 한 경우는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Q17

매년 9월에 전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입사자 또는 9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평가 시 인정되나요?

-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평가 기준을 충족하므로 9월 이후 입사자도 해당연도 안에 검사를 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기관에서 계획한 근골격계 질환 검사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한 해당연도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Q18

전동침대는 상·하체조절 등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인가요?
전동침대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 전동침대는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침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수동침대를 개조하여 자동으로 수급자의 상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Q19

자립보행이 가능하거나 좌식생활 하는 수급자도 전동침대를 구비해야 되나요?

-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와상상태(1-2등급)의 수급자는 전동침대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 3등급 이하 수급자가 좌식생활하거나 침상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동침대 구비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좌식생활 수급자,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욕구사정 기록지 등 관련근거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Q20

목욕(이동) 리프트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 인가요?

- 수급자 목욕 시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수급자 이동을 보조할 수 있는 목욕 리프트, 이동용 리프트를 의미하며, '25년 시설 평가에 한하여 목욕카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 (목욕리프트 예시)



- 목욕카는 용도를 개조한 물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래의 5가지 조건 중 4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 목욕카 5가지 조건 : ①침상형 ②상하 높낮이 조절 ③방수재질의 시트 ④낙상방지 안전장치(난간 또는 안전벨트 등) ⑤목욕카 고정 기능

시설급여 평가지표6(6) 직원권익향상

Q21

상여금 및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직원포상에 해당되나요?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기적인 상여금 및 휴가비는 2가지 이상 복지제도 운영으로 인정됩니다.(복리후생과 포상을 구분하여 시행할 필요 없음)
- 평가매뉴얼에 복지제도에 대해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므로 상여금 및 휴가비 제공 사항에 대해 기관의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합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복지 제도를 직원이 알고 있다면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지표 1(1)운영규정 중 기준①의 규정항목① 참조, 평가지표2(2)사업계획 및 평가 기준①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 필요함을 참조)

시설급여 평가지표6(6) 직원권익향상

Q22

지급받은 가산금으로 직원에게 해외연수를 제공했는데 해당 지표 기준③에 따른 복지제도와 중복 인정되나요?

- 평가지표6(6) 직원권익향상 기준②의 가산금 사용은 일회적이고 비 정기적인 사항으로 가산금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내역은 해당지표 기준③의 복지제도 운영내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8(8) 질향상노력

Q23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설된 평가기준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1일~12월31일)간 준수하였는지 '25년도부터 연간으로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8(8) 질향상노력

Q24

인권지킴이 사업 참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관이 수급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 지킴이 사업을 신청하여 인권지킴이가 기관에 방문하고 관련기록 (방문기록, 방문공문 등)을 확인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지킴이 사업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참여(활동)하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노인전문보호기관의 인권교육 참여 등은 불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8(8) 질향상노력

Q25

관할 지자체에서 인권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25년에 한하여 아래사항(인권관리자 선정, 인권관리자 직무와 권한 규정, 운영방식)을 포함하여 인권지킴이 사업에 준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관리자 인권보호 점검기준」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 기록으로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또한 기관이 소재하는 지자체에서 인권지킴이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위의 인정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자세한 평가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

시설급여 평가지표8(8) 질향상노력

Q26

모든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인정되나요?

- '24년 4월부터 '25년 평가일까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인원 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교육 대상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9(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27

주방과 물리치료실은 지하 1층, 침실은 지상 2층부터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방에 문이 설치되어야 하나요?

-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주방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평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9(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28

**와상 어른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다른 층에는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 와상 수급자만 있는 층이어도 계단출입구, 외부출입구가 있다면 잠금장치를 갖추고,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외부출입구는 배회수급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계단출입구는 수급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각각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상구로 지정된 출입통로의 문도 자동열림장치 기능이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도 수급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내에서 주방으로 출입 자체가 차단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주방에서 나가는 외부출입구의 자동열림장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 단, 승강기만으로 통하는 외부출입구의 경우는 비상 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미설치 시 예외적으로 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9(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29

안내표지판, 위치도, 표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이 각 층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각 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1층-면회실, 식당, 원장실 / 2층-간호사실, 튜립마을(201~205호), 장미마을(206~210호), 물리치료실 / 3층-옥상)
-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실별 표찰은 방문에 부착하여 해당실이 어떤 용도의 방인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9(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30

피난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에 해당 층에 모든 것이 표기 되어 있다면(예: 침실, 물리치료실 등) 별도의 시설 안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각 실별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층마다 해당 층에 대한 모든 시설이 피난안내도에 표기 되어 있다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현장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0(10) 낙상예방 환경조성

Q31

목욕실 외 화장실 세면대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도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 샤워기가 수급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화장실)에 설치되었다면 그 용도가 실제로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평가에서 인정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0(10) 낙상예방 환경조성

Q32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 평가 시 기관 내부 안전손잡이 설치여부는 '수급자의 접근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잠금장치 설치 등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로 확인된다면 안전손잡이 설치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0(10) 낙상예방 환경조성

Q33

병원과 병용하는 물리치료실의 안전손잡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병용공간 또한 수급자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시설급여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의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0(10) 낙상예방 환경조성

Q34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를 통해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도 되나요?

- 낙상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처리는 목욕실, 화장실 등 낙상위험이 높은 공간의 바닥전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있음을 확인하며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페인트, 스프레이 모두 가능하나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기능을 하는지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0(10) 낙상예방 환경조성

Q35

낙상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낙상 위험 평가도구 기준에 따라 고위험자로 분류된 수급자의 경우 ‘낙상 고위험자 표지’를 부착했는지 평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낙상발생 고위험 기준 예시) 보바스기념병원 낙상위험 평가도구 15점 이상인 자, 훈(Huhn) 낙상위험 평가도구 11점 이상인 자

시설급여 평가지표11(11) 재난상황대응

Q36

기관에서 선택한 1가지 재난상황(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면 인정되나요?

- 평가매뉴얼에 제시된 재난상황 중 1가지 이상의 재난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지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화재에 대한 매뉴얼 및 훈련도 인정합니다.

- 다만, 화재 이외 다른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에 대한 훈련도 실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1(11) 재난상황대응

Q37

재난상황대응 훈련 시 참여 못 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하나요?

- 재난상황 대응 훈련의 참석률은 확인하지 않으나 모든 대상자가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반기별 1회 이상 훈련 참여를 권고드립니다.

※ 평가일 직원 무작위 선정을 통해 면담 예정

※ '25년부터 공생은 재난상황대응훈련의 주기를 연 1회로 적용함

시설급여 평가지표11(11) 재난상황대응

Q38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 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

-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 병설기관에서 자위소방대를 함께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별 수급자와 종사자가 참여한 훈련실시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훈련내용, 훈련 사진)가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2(12) 시설안전

Q39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소방점검은 하나로 작성해도 되나요?

- 병설기관 전체 점검 후 하나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평가대상 기관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2(12) 시설안전

Q40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3년에 한번만 점검하는데, 인정되나요?

-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기준④ ‘매월 점검’은 충족합니다.
- 또한 외부업체가 법적대행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기준③ ‘연 1회 점검’도 충족합니다. 다만 법적대행업체가 아닌 경우 전기안전공사, 법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연 1회 점검이 확인되어야 기준③을 충족합니다.
- 다만, 전기 또는 가스 공사가 검사를 거부하였는데, 관할 지자체에 법적 대행업체가 없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공문서 등)가 확인되면 해당 연도 검사는 예외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2(12) 시설안전

Q41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기관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일 경우는 3년에 한번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여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연 1회 받지 않은 경우 불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2(12) 시설안전

Q42

선임된 안전 관리자에 의한 점검이 무슨 뜻인가요?

- 시설안전12(12) 기준③의 경우 일전에는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인정했으나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2021.2월부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에 의한 점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지표 기준④의 경우 매월 하는 점검으로 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업체, 외부인 중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3(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Q43

문자, 카톡, 유선을 통해 수급자(보호자) 상담 진행 시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분기별 1회(공생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 기록으로 평가하며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 상담대상자명, 관계, 상담내용이 확인되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문자, 카톡, 유선으로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확인사항(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 상담대상자명, 관계, 상담내용)을 포함한 기록이 확인되어야합니다.

※ '24년도까지 공생은 상담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임

시설급여 평가지표13(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Q44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할 때, 모든 수급자에 대해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상담이 아닌 보호자 간담회, 자체 만족도조사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용하여 급여에 반영해도 인정되나요?

- 상담 결과 조치사항 또는 욕구변화 등이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상담 외에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반영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 다만 반영 내용이 신체·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Q45

동일대표자가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시설에 수급자를 모두 모아놓고 자원봉사 활동(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 병용규정에 어긋나며, 기관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 개 시설만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5) 수급자의 권리

Q46 입소정원만큼 이동식 칸막이 구비란 무엇인가요?

- 침실의 침상마다 커튼 설치가 원칙이나 '25년 시설평가 까지는 이동식 칸막이 구비(사용)시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이동식 칸막이는 2~4인 침실에 'ㄷ'형 이동식 칸막이 1개 이상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합니다.

※ 이동식 칸막이 인정 예시: ① '—'형 3개, ② 'ㄷ'형 1개 ⊕ '—'형 1개, ③ 'ㄷ'형 1개

시설급여 평가지표15(15) 수급자의 권리

Q47 1인실에도 침실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가 필요한가요?

- 원칙적으로 기저귀 교환 등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1인실에도 이동식 칸막이 또는 침실커튼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에 반투명 처리, 커튼 또는 블라인드 설치를 통해 존엄성을 배려한 급여 제공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대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5) 수급자의 권리

Q48 바닥 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침실에 커튼설치가 필요한가요?

-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한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수급자 침실의 침상마다 커튼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바닥 생활 수급자도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커튼(이동식 칸막이) 길이의 기준은 수급자 전신이 가려지는 경우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25년 시설평가 까지는 이동식 칸막이 구비(사용)시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5) 수급자의 권리

Q49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에 관한 교육은 누가 실시하나요?

-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교육은 시설장 또는 영상정보 관리자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장(또는 영상정보 관리자)은 교육진행·관리자로서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2025년 평가일에 면담으로 평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6 개별욕구존중

Q50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 ‘별도의 공간’은 수급자가 취침시간 이후에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수급자가 생활하는 침실 외에 시설 내 공간(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면 인정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6 개별욕구존중

Q51 야간에 개인활동 희망 시 야간활동시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야간 활동시간’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취침시간 이후에도 수급자가 활동 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다만, 야간 활동시간이 심야시간(22:00~06:00)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침시간 이후 2시간 더 활동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예시) 취침시간이 20:00인 경우 22:00까지 활동할 수 있는지 평가함

시설급여 평가지표17(16) 야간보호

Q52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

- 야간근무자가 매일 수급자 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며, 해당

기관의 인력으로 신고 된 직원이 수행한 경우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의 [별표5]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입소자에 대한 상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7(16) 야간보호

Q53

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가 서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전달) 할 내용은 어디에 작성해야 되나요?

- 인계 내용은 야간점검일지 서식 특이사항에 기록하거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계 내용을 기관에서 개발한 별도 서식에 기록한다면 기준①의 야간점검일지 특이사항에 미기재(공란) 하여도 인정 가능합니다.
-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야간점검일지(특이사항)에 주간근무자가 같은 날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과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은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특이사항 없는 경우에는 “특이사항 없음” 등을 기술하여야 하며 공란은 불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7 야간보호

Q54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인계내용을 작성해야하나요?

- 인계(전달) 내용은 다음 근무자에게 특이사항 등을 인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교대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인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무자가 1명이라도 교대(새롭게 출근)하여 직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계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정보제공

Q55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의미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은 운영규정 중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즉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예 : 표준약관 등 활용)
- ※ 게시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관 로그인/나의 블로그/상세보기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Q56

와상상태이며 인지가 양호하지 않은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어 본인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나요?

- 수급자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지가 양호한 자에게 제공하여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 인정합니다.
- 인지가 심하게 저하된 수급자의 경우, 본인에게 주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제공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전혀 없어 본인 제공만 가능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노인인권보호

Q57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매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하나요?

- 평가지표19(18)노인인권보호 기준① 노인인권보호지침은 입소한 수급자의 보호자(인지기능이 양호한 경우 수급자도 가능)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입소 시 수행하며, 매년 제공에 대한 수행사항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Q58

해당 분기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이미 마친 경우에도 신규입사자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19(18)노인인권보호 기준③ 모든 직원이 분기별로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확인하며, 신규입사자의 경우 평가지표4(4)직원교육 기준③에 따라 급여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을 포함한 급여제공지침 교육도 이뤄져야합니다.
- 또한 퇴사일이 속한 분기는 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평가에서는 확인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달('25.1월)부터 적용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Q59

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 제재를 할 때마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 제공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때 제재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

- 신체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받은 동의서의 경우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확인사항 :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
- 해당 제재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제재가 종료된 후에 다시 제재를 해야 할 경우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로 통지한 뒤 동일한 사유가 계속 유지되어 제재를 하는 경우는 통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Q60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침대난간을 올리기, 휠체어에서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나요?

-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한 모든 경우에 대해(침상난간 올리기,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 등 포함)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때 확인하는 '내용'은 경과기록이 아닌 제재에 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 침상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의 항목은 낙상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재로 입소 시 침대 및 휠체어 이용 예정임에 따라 제재시작으로 보고 제재기록 및 통지를 수행할 경우 인정됩니다.(타 억제대는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 제재 및 통지를 했는지 확인)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Q61

비위관(L-tube)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반복해서 신체제재를 적용하는 경우, 식사시간마다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 해당 제재 사유가 발생할 시 통지해야 하며, 만약 제재 사유가 종료된 이후 다시 제재를 해야 할 경우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최초로 통지한 뒤 동일한 사유(예 : 비위관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계속함)가 계속 유지되어 제재를 하는 경우는 최초 통지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Q62

억제대를 최초로 시행했을 때 보호자에게 통지했고 현재도 동일한 억제대를 하는 상황이면 매 해마다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 통지 간격에 대한 평가기준은 없으나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 기관의 운영방침에 맞추어 시행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억제대 사용이 동일한 사유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억제대라고

하더라도 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존사유가 중단된 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용 시에는 가족 등에게 통지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0(19) 생애말기돌봄

Q63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상황을 위한 별도공간은 무엇인가요?

- 해당 지표는 호스피스 병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며, 임종증상이 관찰되거나 전염(감염)병 발생으로 입소자간 분리가 필요 할 때 특별침실을 활용해도 '별도 공간'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1(20) 응급상황대응체계

Q64 목걸이 형태의 응급상황 알림장치(응급벨)도 인정되나요?

- 평가에서는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각 침실, 화장실(칸마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응급상황 알림장치('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수급자에게 목걸이 형태로 제공한다면 수급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1(20) 응급상황대응체계

Q65 산소충전업체에서 의사처방전이 있어야만 산소 가스 충전이 가능하다고하여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평가매뉴얼에서는 이에 대해 법적한계를 인정하며 산소가스 충전이 된 산소통을 구비한 기관도 허용, 구비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의료용 산소발생기 뿐만 아니라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 구비도 가능하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함을 안내드립니다.
- 응급의료기기 중 산소통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산소통 외 다른 기기는 변동사항 없이 구비가 필요하고,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확인(개봉 상태일 경우 분사가능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1(20) 응급상황대응체계

Q66

산소스프레이를 구비 한 경우에도 별도로 산소마스크와 산소통 연결관(카테터)를 필수로 구비해야 되나요?

- 산소스프레이에 마스크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스프레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산소마스크를 별도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표는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응급상황 시 사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산소스프레이 제품에 따라 마스크와 연결관(카테터)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와 연결관(카테터) 구비여부도 확인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2(20) 감염관리

Q67

일회용 간호비품의 관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일회용 간호비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대장에 구입일자 및 사용여부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모품(알콜솜, 밴드, 혈당체크용품 등)의 사용여부 등은 기록·관리 하였는지 평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 기록 : (예시) 포셉(켈리, 핀셋), 의료용 가위 등
- 다만, 일회용 간호비품의 사용기간(유통기한)은 소모품을 포함하여 모든 간호비품의 사용기한을 확인하여 평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3(22) 수급자 건강관리

Q68

동일법인·동일대표자 기관 내 전원 시 수급자의 결핵검진 포함 검진자료를 대체하여 인정하는데 양로원도 포함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기관 내 전원하는 수급자는 서비스 연속성을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3(22) 수급자 건강관리

Q69

결핵 검사에는 흉부 영상검사, 객담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해도 인정되나요?

- 흉부 영상검사, 객담검사 모두 가능하며, 결핵 검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발행 건강진단서로서 결핵 검사의 내용과 그 결과(판독)가 확인된다면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3(22) 수급자 건강관리

Q70

와상 수급자도 무조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모든 수급자에게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3(22) 수급자 건강관리

Q71

등급외자로 입소 시 감염병 진단 자료를 제출했고, 입소 이후 장기 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진단 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 등급외자라도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검사는 입소일부터 적용하여 등급외자 입소 당시 제출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통합적 사정

Q72

Bobath의 낙상위험도 평가 도구에서 와상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 위험도 평가 도구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제공해드리지 않으며,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욕창 위험 등의 수준을 파악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위험도 평가도구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해석 등은 관련 논문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통합적 사정, 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Q73

- 통합적 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서 수립에 대해 가능한 해당직종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의 유급휴가 등에 의한 미작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 기관에 물리(작업)치료사가 1명만 있어 휴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및 휴일로 대직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에 물리(작업)치료 계획 미반영 예외인정 가능하나 물리(작업)치료사가 휴가에서 복귀한 날 즉시 물리(작업)치료 계획을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휴가로 다른 직종의 직원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직원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하고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 대상(30인 이상)인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에 수급자의 물리(작업)치료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통합적 사정, 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Q74

- 등급외자 입소 시에 욕구사정을 포함한 통합적 사정과 그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반드시 통합적 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 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등급외자 입소 시는 급여제공계획서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일부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25년도에는 확인방법이 변경되었으나 '24년까지는 반영이 필수 이므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후 기존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Q75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통합적 사정, 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갱신이나 등급변경
시에도 욕구사정 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5년 시설평가에서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통합적 사정 및 급여 제공계획서는 반기별 1회 이상(공생은 연1회 이상) 작성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갱신 또는 등급변경 후 개인별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상 수급자 상태 변화가 있고, 욕구의 변화 등이 파악된다면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여 현 수급자 상태에 맞게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Q76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통합적 사정, 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재입소시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급여개시전(입소당일 포함)까지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안내드립니다.

Q77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통합적 사정, 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동일법인·동일대표의 시설급여기관으로 수급자 전원 시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의 시설급여기관으로 전원 시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평가지표23(22) 수급자 건강관리 참고)'을 제외한 그 외 평가지표는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통합적 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통합적 사정, 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Q78

- 입소한 수급자가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수급자 상태에 따라 급여제공 계획 변경 및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장기간 입원 후 복귀했다면 입원 전 상태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욕구사정을 포함한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79

'25년부터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입소중인 수급자도 '25년 1월 1일까지 모두 통보하여야 인정되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서부터 급여제공 계획서 적용(반영)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면 평가에서 인정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80

급여제공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서 작성한 것만 인정하나요?

- 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 기관 별도전산, 별도 수기 기록지 등에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한 확인사항이 포함되면 인정됩니다.
- 다만, 전산의 경우 수급자별로 관리하며 개별 로그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며 전산 및 수기 기록지 모두 인지기능이 양호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됩니다. (비대면의 방법으로 제공했을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전문이 제공되었음이 증빙되어야 하며 추가로 유선상담이 필수로 이뤄져야 함)

시설급여 평가지표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81

신규 입소자의 경우 이전 기관에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아 급여 제공계획서를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공단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신규 수급자의 이전 계약 미해지 등 공단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지연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까지 공단에 통보하고, 신규 수급자가 공휴일·일요일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일요일의 익일까지 공단에 통보 하면 인정됩니다.
- 다만, 급여제공 계획서 통보가 늦어진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 종합 의견 등에 기록하고 평가 시 해당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인정됩니다.
- 또한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이 소급되어 급여제공계획서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사유를 기록해놓고, 평가일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82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입소 당일 작성해야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당일 제공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의 내용에 대해 급여제공 시작 전에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수급자라면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보호자의 부재 및 연락불가 등으로 급여개시(제공) 전 까지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예외 인정하며, 비대면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비대면 방법 증빙 자료와 유선상담 내역이 확인될 경우 제공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83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

- 2021.2월부터는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
① 사유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한 뒤 급여제공 또는 ② 사유가 지속된 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 프로그램 제공일지 등 관련 내용에 기존 계획과 다른 사유를 건건이 작성해야 인정합니다.
- 수급자의 상태가 자주 변할 수 있고, 그 때마다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요양평가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시 급여제공기록지 등의 일지에 건건이 사유를 작성하며 급여를 제공하다가 해당 사유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면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5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84

물리(작업)치료사 연차 시 예정된 물리(작업)치료를 못하게 되는데 평가 시 괜찮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휴가에 포함되나요?

- 물리(작업)치료사의 휴가 등에 따른 부재로 급여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면 평가 시 확인하여 미실시에 대해 인정하나 기관은 최대한 다른 날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지속적으로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기관 상황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 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소요된 유급사유인 경우 미해당)인 경우 인정합니다.
- 출산휴가는 근무인원이 없음에 따른 미실시를 인정하지만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직종은 물리(작업)치료사)을 통해 실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5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85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계획에 따라 물리(작업) 치료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나, 수급자의 거부 또는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하지 못했다면 물리치료 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5(24)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27(26) 목욕 서비스

Q86

주 1회 목욕서비스 제공 시 요일을 변경해도 되나요?

- 목욕서비스 급여제공 계획을 요일로 작성하였는데 계획과 다른 요일로 변경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예시: 월요일로 계획 수립하여 제공하다가 수요일로 변경하여 제공) 주1회 목욕서비스 제공은 인정하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므로 계획과 다르게 제공 된 변경사유가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 급여제공계획 확인사항: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 또한,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급자의 컨디션 악화 등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날짜에 목욕'전'상태기록이 있어야 미실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7(26) 목욕 서비스

Q87

목욕서비스 제공 시 목욕 전·후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제공기록지에 목욕 전·후 상태를 기록해도 되나요?

- 수급자의 상태 작성 시 반드시 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등)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입술·손톱 색깔, 피부손상 등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상태 등을 관찰하여,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의 작성방법을 참고, 목욕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상없음, 얼굴 창백함, 오한 있음 등’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체크 불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27(26) 목욕 서비스

Q88

목욕서비스 기준②번의 월5회 이상 목욕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5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 다만, '25년 평가시에는 2월과 명절(구정, 추석)이 포함된 월에는 기준①번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②번을 예외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8 배설관리

Q89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집중배설관찰 기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입소 당시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작성한 등급외 입소자가 입소 이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재작성하는지 평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급자의 배설상태 등이 최초 입소 시점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면 집중배설관찰 기록표를 다시 작성하여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8 배설관리

Q90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재입소시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 따라서,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집중배설 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8 배설관리

Q91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도 집중배설관찰 기록표에 대소변 여부를 기입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28 배설관리 기준①의 집중배설관찰기록표는 신규 수급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72시간동안 매 시간 섭취 및 대소변량, 기저귀 및 옷 교환(옷에 배설 실수한 경우)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집중배설관찰기록표의 작성은 신규 수급자의 배설관리를 위한 상태 파악이 목적이므로 매시간 기록하여야하며, 기저귀 미이용 시 시간대별 배설여부만 기록해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 '24년도까지는 대소변량으로 확인함

시설급여 평가지표28 배설관리

Q92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 기저귀 교환 시간을 급여제공기록지 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 교환)란에 기입하거나 기관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

Q93 욕창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 기록해야 하는 항목에서 별도의 서식 없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욕창관리 체크, 욕창 발생여부 등 특이사항에 기록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욕창발생 고위험 대상자의 욕창발생여부 관찰 기록은 급여제공 기록지 욕창관리에 체크 후 특이사항에 관찰 결과를 기록 시 평가에서 인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

Q94

2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내용 기록 시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기록해도 인정되나요?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양식도 인정하며 체위변경 날짜, 시간, 급여 제공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체위변경 시 참고 가능하도록 적용한 체위도 기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

Q95

통합적 사정의 욕창위험도 평가 시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욕창위험도 분기별 파악과 중복으로 인정 되나요?

- 분기별로 1회 이상 욕창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평가지표24(23) 통합적 사정에 따른 '25년도 평가시 반기별 1회(공생은 연1회) 이상 욕창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것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분기별 각 1회 이상 실시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의 기준①과 평가지표 24(23) 통합적 사정의 기준③을 모두 인정합니다.

※ '24년도까지는 통합적 사정 주기는 시설의 경우 연1회 이상 적용으로 평가함

시설급여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

Q96

평가도구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급자라도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한 분, 간호사 판단 하에 체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체위변경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급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체위변경이 가능하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2시간마다 체위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

Q97

욕창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체위변경 의무대상인가요?

-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최소 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을 제공해야 하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여 체위변경이 필요치 않다면 관련 근거를 확인(수급자 스스로 체위변경 실시 가능여부 현장 확인 등)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체위변경은 제공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가 2시간마다 스스로 체위변경을 실시하였는지 및 욕창상태 확인은 필요합니다. 체위변경은 제공하지 않더라도 욕창방지 보조도구는 제공해야 하며 주 1회 이상 욕창변화를 주기적으로 관리·기록하여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

Q98

욕창관리기록의 '조치내용'은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조치내용'은 욕창관리에 대해 조치한 내용 기록 시 인정하며, 촉탁의 진료, 병원 진료, 보호자 연락, 간호(조무)사 처치 등 욕창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0(28) 투약 및 약품관리

Q99

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참약에 대해 투약기록을 하나요?

- 수급자가 외출, 외박한 상태에서 지참한 약에 대해 투약이 이뤄졌는지는 평가 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투약하는 시간에 투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외출, 외박 등의 기록을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
- 또한, 시설내로 복귀시 약물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수급자의 외출, 외박 대장은 기관에서 투약 뿐 아니라, 프로그램, 계약의사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안전관리와 기관 내 감염예방관리를 위해서도 외출, 외박에 대한 기록관리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0(28) 투약 및 약품관리

Q100

전문의약품에 대한 투약시 약국에서 포단위로 처방 받았을 때에도 투약량 및 잔량을 알약 단위로 기록하나요?

- 전문의약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처방전에 의해 나온 ATC(약국 재 포장 조제약)약물에 한하여 포 개수별로 잔량관리 할 경우 인정합니다.

※ 투약량 및 잔량 계산방법 예시

〈투약 기록〉										
날짜	투약명	확인사항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필요시	투약량	잔량	비고
1/23	내과약	투약시간	08:30	11:45	17:25	:	:	3개	56개	
		특이사항	-	-	-					
		제공자명	☆☆☆	☆☆☆	◇◇◇					
1/23	정신과약	투약시간	08:32	:	17:27	:	:	2개	54개	
		특이사항								
		제공자명	◇◇◇		☆☆☆					
1/24	내과약	투약시간	08:28	11:40	17:20	:	:	3개	53개	
		특이사항	-	-	-					
		제공자명	☆☆☆	☆☆☆	◇◇◇					
1/25	정신과약	투약시간	08:31	:	17:25	:	:	2개	52개	
		특이사항								
		제공자명	◇◇◇		☆☆☆					

시설급여 평가지표30(28) 투약 및 약품관리

Q101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타이레놀, 가스활명수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투약 가능한가요?

- 시설평가 시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을 수급자에게 투여 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나 상비약의 경우도 약품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시거나 의사와 상의 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0(28) 투약 및 약품관리

Q102

어르신별 투약시간이 비슷하고 시간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 시간이 달라야 하나요?

- 평가에서 투약기록은 실제 제공시간을 기록하는지 평가하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여러 인원이 투약을 제공하는 경우, 투약제공자가 여러 인원인 것이

확인된다면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시간이 동일하여도 인정합니다.

- 다만,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수급자 모두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시간으로 작성했을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0(28) 투약 및 약품관리

Q103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간호사실 안에 있는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나요?

- 특정장소인 간호사실에 약을 보관하며 간호사실 안에 있는 약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없다면,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경우에만 개방'되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신체기능프로그램

Q104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의 기준과 프로그램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체기능 프로그램 기준②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실시 여부는 연간 계획이 없더라도 월간 또는 주간 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했다면 '25년도 시설평가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신체기능 프로그램 종류의 예시로 맨손체조, 타월 체조, 탄성밴드 운동 등이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 급여/단기보호)'의 작성방법을 참고

시설급여 평가지표32(30) 인지기능 프로그램

Q105

인지기능 프로그램 시 그룹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인지기능검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분류합니다.
- 다만, 평가지표24(23) 통합적사정 기준④ 인지기능평가 예외대상자의 경우 프로그램 그룹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룹화해야 평가에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32(30), 33(31) 신체기능 · 인지기능 · 여가활동 프로그램

프로그램 계획 후 대상자가 변경될 때 대상자명을 반드시 수정 작성하여야 하나요?

Q106

- 프로그램 계획 작성 시 명확한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수사항을 ‘대상자명’으로 명시하였으나, 수급자의 입·퇴소, 기능상태 변경으로 인한 그룹 변경의 사유로 대상자가 자주 바뀔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상자명’에 수급자의 성명 대신 해당 프로그램 대상 군(거동 시 부분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 공생 해당사항 없음

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32(30), 33(31) 신체기능 · 인지기능 · 여가활동 프로그램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 일지를 그룹별로 작성 해야하나요? 통합하여 기록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Q107

- 프로그램 계획은 분류된 그룹별로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등을 기록해야하며, 프로그램 실시 기록은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을 기록하며 그룹별 실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일지의 작성 방법은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계획하고 실시하였는지 확인되어야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32(30), 33(31) 신체기능 · 인지기능 · 여가활동 프로그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Q108

-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 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109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각 그룹이 동일해도 되나요?

-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체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신체기능상태 등',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인지기능검사결과 등', 여가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을 반영하여 분류합니다.
- 예를 들어, 욕구사정,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신체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이며, 인지기능검사(MMSE 등) 결과를 토대로 그룹을 나누는 것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가 프로그램에서도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에 따라 인지기능을 고려하여 나눌 필요가 있다면 인지기능검사 결과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110

명절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 수급자에게 다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평가기준에 명시된 대로 활동 주기를 충족해야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 명절, 공휴일 등의 미실시 사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111

신체기능 ·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여가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해도 되나요?

- 평가매뉴얼에서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직종은 평가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Q112

매번 똑같은 사유(거부, 와상, 인지장애 등)로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어르신들은 매번 불참사유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하나요?

- 최초 불참사유 작성 후 신체, 인지 상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경우(완전와상, 인지장애 등), 최초 작성 내용으로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모든 수급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음악 듣기 등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을 권고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거부인 경우, 매번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해서 수급자가 가능한 한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사유가 계속 기록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요구 및 의견수렴과 사례회의 등에서 논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113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수렴과 의견반영을 그룹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수급자 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 31(29)신체기능프로그램, 평가지표 32(30)인지기능프로그램, 33(31)여가활동프로그램 기준③에 따라 분기별 의견수렴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반영해야합니다. 그룹별로 분기마다 의견수렴 여부를 확인하며, 프로그램 지표별로 연간 1건 이상 반영하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 공생은 그룹별 의견수렴 해당 없음

시설급여 평가지표32(30) 인지기능 프로그램

Q114

주 3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진행이 어려운 장소에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3개 그룹인데 그룹별로 같은 날에 시간을 달리 진행해도 되나요? 프로그램 내용은 모두 달라야 하나요?

-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하며, 그룹별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같더라도 각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여부가 확인된다면 평가 시 인정합니다.
- 인지기능검사결과 등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명은 같더라도 목표, 세부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31) 여가활동프로그램

Q115

여가 프로그램을 주 2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주 2회 실시한 것을 전체 그룹에 적용해도 인정되나요?

- 여가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그룹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실시한 것을 각 그룹별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공생은 그룹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함

시설급여 평가지표33(31) 여가활동프로그램

Q116

생신잔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여가활동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수급자 상태와 욕구에 맞게 그룹화 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 수급자를 위한 행사로 진행되는 생일잔치 활동은 여가활동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31) 여기활동프로그램

Q117

기관에서 시행하는 활동 중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봉사가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활동은 프로그램 관련 평가지표의 방향성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활동에 대해 평가지표 방향성에 따른 관련 지표를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기관 활동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 제공
관련 평가지표	평가지표14(14)①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 참여 행사	평가지표14(14)③ 자원봉사	평가지표14(14)③ 자원봉사	평가지표14(14) ③ 자원봉사 (이·미용 비급여 항목 수급자 미청구 확인)

- 한 활동에 대해 여러 지표 및 기준 중복적용 시 불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34 기능회복훈련계획, 35 기능회복훈련

Q118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계획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능회복 훈련(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각 영역별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급여제공계획서에 기능회복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훈련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능회복훈련내용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해야합니다.
- 영역별 훈련 중 수급자 상태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을 하지 못한 영역의 경우 외상상태 등 근거가 확인될 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2) 관절구축예방

Q119 관절구축 예방은 물리(작업)치료사가 관리해야 되나요?

- 기관이 스스로 관절구축 정도를 평가하고, 유지된 수급자를 확인하는 평가지표이며, 물리(작업)치료의 영역인 호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절구축예방 업무는 급여제공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의료기사가 행하는 관절구축예방 업무를 의미하지 않음

시설급여 평가지표36(32) 관절구축 예방

Q120 진행성 질환 등 입소이후 발병으로 관절 제한이 발생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관절구축 정도를 관리할 수 없는 진행성 질환(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이 있으며 입소이후 뇌졸중이 발병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 인공관절 수술 등 관절제한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표본에서 제외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7(33) 급여제공 결과평가

Q121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4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24년 12월에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 급여제공 결과평가는 반기별 1회 실시하므로 상반기에 입소한 수급자는 하반기에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급여계획을 재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정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결과평가를 하는 것 보다 개별적으로 6개월 간격으로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7(33) 급여제공 결과평가

Q122

급여제공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급여제공 결과를 평가할 경우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이 확인되도록 관련 기록을 작성한 경우 인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제공모니터링을 충실히 작성하여 급여제공 결과 평가의 확인사항(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이 확인되면 급여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8 사례관리

Q123

**기관 운영을 시작한 달에도 사례회의를 실시해야 하나요?
'25년 월 도중에 현원 변경 시 사례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사례회의 실시 주기는 기관의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30인이상 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10인이상 30인미만 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개시월이나 현원변경 시 다음 달부터 현원에 따른 사례회의 실시주기를 적용합니다. 분(반)기의 마지막 달에 개시 및 현원변경이 있을 시 다음 분(반)기에 적용하며 변경 해당 분(반)기는 현원 변경 전의 주기에 의해 실시함을 확인합니다.
(예시) 3월에 15명에서 35명으로 현원변경 시 1-3월까지의 반기 수행 4월부터 분기 실시 확인
- '24년도 까지는 '21년 평가매뉴얼 사례회의 실시주기를 참고 바라며, 사례회의 분기 및 반기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25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8 사례관리

Q124 사례회의 시 회의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 사례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특성이 반영된 급여제공을 위해 내부참가자, 외부참가자가 참석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회의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내부참가자 전원 의견 필수), 사례관리 계획, 내부참가자명(직종), 외부참가자명(소속) 항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내부참가자 전원 의견이 필수사항 이므로 발언자명이 있어야 되며, 외부참가자의 경우에도 발언자명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의내용 작성을 권고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8 사례관리

Q125 외부참가자의 경우 일정조율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수급자 사례관리는 다양한 직종별 인력이 수급자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외부참가자의 1명 이상 참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 참가를 우선으로 운영하되, 외부참가자의 일정조율, 수급자 문제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기관규모별로 직종별 1인 이상 모두 참여하는 경우 외부참가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 ※ (30인이상)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영양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
(30인미만)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영양보호사

시설급여 평가지표38 사례관리

Q126 사례회의 결과 반영 시 꼭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해야 하나요?

- 30일 이내에 사례회의 결과를 급여에 반영해야하며 반영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회의 내용 및 결과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혹은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에 반영한 내용을 단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례회의 대상선정 사유 및 회의 내용, 결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는 다양한 문제나 욕구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이므로 회의 결과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거나 급여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수급자라면 사례관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8 사례관리

Q127 사례관리 결과 '급여 등에 반영' 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25년부터 사례관리 회의는 단순급여 반영(생활실 변경, 물품제공 등 1회성으로 종결)은 사례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 다각도로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인정할 수 있으나, 퇴소 예정 수급자에 대해서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계기관에 접수·신청·선정결과 등 퇴소일까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8 사례관리

Q128 신규 입소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

- 사례회의 대상자는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초기 입소하여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입니다.
- 신규 수급자에 대해 통합적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이 급여 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이뤄져야 하므로 사례회의 결과 반영에 대해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9(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Q129 월 중 입소자는 해당 월에 계약의사 진찰을 2회 이상 받지 못해도 문제가 없나요?

- 입소일 이전에 이미 계획된 계약의사 방문일정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평가 시엔 입·퇴소월은 제외하여 확인하나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최대한 진료를 제공받도록 노력해주시길 권고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9(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Q130 신규수급자가 부적응으로 입소 하루 만에 퇴소할 때도 이용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제공을 수행해야 하나요?

- 신규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수립이 급여개시 전(입소당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용종료 상담 실시 및 연계기록지 작성 및 제공이 필수로 이뤄져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단, 입소당일 퇴소 및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입소하여 아직 미작성인 경우 이용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미제공 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39(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Q131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 기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 진료기록 또는 촉탁의 진료 등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다만, 기준②의 의료기관 연계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25.1월)부터 적용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0(35) 체중관리

Q132 특수체중계는 0.1kg 단위까지 측정 가능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적절한 체중관리를 위해, 0.1kg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수체중계를 이미 구비하였거나 제품 품귀 등으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25년도 시설평가에 한하여 사람의 체중을 측정하도록 제작된 특수 체중계의 경우 500g(0.5kg)단위 측정 기계도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37) 욕창 회복관리, 43(38) 장기근속 현황

Q133 욕창현황, 장기근속현황 관련 평가 방법 중 전산자료는 무엇인가요?

- 시설급여 평가지표42(37) 욕창 회복관리, 43(38) 장기근속 현황 평가방법 중 '공단 전산자료'는 '인정조사 및 갱신, 등급변경에 따른 인정조사 내역, 청구한 이력 등'을 의미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4 식사(간식)제공결과

Q134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수급자의 알레르기, 소화문제, 치아 상태, 저작 곤란, 연하 곤란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섭취하지 못하는 식품을 파악하여 대체 식품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4 식사(간식)제공결과

Q135 보건소 식단표를 따라 제공하되 죽을 먹어야 하는 수급자가 있어 식단표에 죽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 밥 대신 죽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사정 결과 및 급여계획에 따라 씹는 기능이나 소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제공한다면 인정합니다.